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023. 6.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63호로 2023년 5월 26일 이규선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영등포구 내 장기기증 문화의 확산 및 장려를 위해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를 예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장기등기증희망자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3조)

나. 장기등기증자·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1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5. 31. ~ 6. 5.):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정의)**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하여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
- **안 제11조(예우 및 지원)**에서는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해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의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 **안 제12조(표창)**는 장기기증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표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 검토 결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기존의 장기등기증자 뿐만 아니라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해서까지 예우 및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2022년에 개정된 사항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된 내용보다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고 있음.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기등기증자는 4,478명(전년 대비 0.79% 증가)이었으며, 이식 대기자는 48,472명(전년 대비 12.3% 증가)으로<sup>1)</sup> 장기등기증에 관한 인식이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기자에 비해 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서울시 자치구별 2021년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기등기증희망자는 15,707명으로 인구 대비 기준, 25개 자치구 중 19위로서 하위권에 속함.

본 개정을 통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기등 인체조직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예우 및 지원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연번 | 자치구명 | 등록자수   | 인구 만명당 | 연번 | 자치구명 | 등록자수   | 인구 만명당 |
|----|------|--------|--------|----|------|--------|--------|
| 1  | 강남구  | 30,448 | 571    | 14 | 서대문구 | 18,899 | 620    |
| 2  | 강동구  | 16,949 | 366    | 15 | 서초구  | 23,798 | 577    |
| 3  | 강북구  | 14,365 | 480    | 16 | 성동구  | 12,092 | 423    |
| 4  | 강서구  | 23,898 | 416    | 17 | 성북구  | 21,931 | 509    |
| 5  | 관악구  | 22,260 | 458    | 18 | 송파구  | 28,180 | 428    |
| 6  | 광진구  | 14,898 | 438    | 19 | 양천구  | 19,342 | 432    |
| 7  | 구로구  | 14,317 | 361    | 20 | 영등포구 | 15,707 | 417    |
| 8  | 금천구  | 8,518  | 369    | 21 | 용산구  | 10,041 | 450    |
| 9  | 노원구  | 26,606 | 521    | 22 | 은평구  | 19,627 | 415    |
| 10 | 도봉구  | 14,507 | 457    | 23 | 종로구  | 11,463 | 792    |
| 11 | 동대문구 | 14,952 | 443    | 24 | 중구   | 8,149  | 665    |
| 12 | 동작구  | 18,345 | 476    | 25 | 중랑구  | 15,243 | 394    |
| 13 | 마포구  | 17,644 | 478    |    |      |        |        |

▲ 2021년 자치구별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자 현황(출처: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1) 출처: 2021년도 장기등 이식 및 인체조직 기증 통계연보(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2.12.)

# 참 고 자 료

##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홍보 및 교육·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5.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